

의안 번호	2214	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<b>검 토 보 고 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 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. 2. 2.(금) 박경흠 의원 외 2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2. 15.(목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흠)

- 상위 법령인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 개정(2023. 8. 16. 개정, 2024. 2. 17. 시행)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주민조례청구권 보장 홍보 규정 신설(안 제2조제3항)
  - 정보시스템 등록 및 처리현황 공개 규정 신설
- 나.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 수 규정(안 제3조)
  - 최소연서 수 서명 문구 구체화
- 다. 주민조례청구서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 규정(안 제4조)
  - 공동대표자용 지정 서식 신설 및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
- 라.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 등 내용 구체화(안 제5조)
- 마.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방법 및 청구인명부 서식 등 규정(안 제6조)
  - 청구인 명부 서식 보완(별지 제6호서식)
  - 수입자의 임무 및 명부 서명·제출 방법 명시
- 바.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규정(안 제7조)
  - 청구인명부 내용에 조례명 및 이의신청 기간 추가
  - 청구인명부 열람 방법 및 장소 구체적 명시
- 사. 청구인 명부의 서명 이의신청에 대한 명확한 회의규칙 명시(안 제9조)

- 아. 청구인 명부 보정기간 등 규정(안 제10조)
  - 보정기간, 통지방법, 필요서류 교부 등 구체적 명시
- 자. 주민조례청구의 수리·각하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11조)
  - 수리 또는 각하 기간 및 통지 방법
  -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
  - 각하 관련 절차 간소화 가능 규정 신설
  - 수리 또는 각하 추가 필요 내용 회의 규칙 근거 마련
- 차. 대표자 변경, 철회 신청 절차 등 규정 신설(안 제12조 및 제13조)
- 카. 청구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신설(안 제14조)
- 타.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(안 제15조)
- 파. 주민조례청구 처리 시 구청장 협조사항 구체화(안 제16조)

#### 4. 근거법규

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및 제12조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 됨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# 근거법규

##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4. 2. 17.] [법률 제19633호, 2023. 8. 16., 일부개정]

**제3조(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, 참여·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**제12조(청구의 수리 및 각하)**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, 제5조 및 제10조제1항(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,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제11조제2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다)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
2.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(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

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3. 8. 16.>

1.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: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2.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: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·결정이 끝난 날(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·결정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
-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-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「지방자치법」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6.>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3. 8. 16.>